

선수등록규정

제 정 : 2010. 10. 1.

개 정 : 2011. 3. 26.

개 정 : 2015. 4. 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2 조에 의거 대한장애인럭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가맹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제 2 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본 협회에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선수”라 함은 본 협회에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개정 2015.4.30.>
3.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해당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변경”이라 함은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 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4.30.>
5. “이적동의서”라 함은 등록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6. “클럽선수”라 함은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이외에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동호회 등으로 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를 말한다.<개정 2015.4.30.>
7.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협회가 운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5.4.30.>

제 3 조 (제정의무) 본 협회에 가맹승인된 가맹단체 <(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선수등록규정을 가맹단체의 이사회 승인으로 제정하고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제 4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선수자격심의위원회

제 5 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협회는 가맹단체운영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1. 선수등록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선수수급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선수자격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5. 규정위반자 조치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 협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30.>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본 협회 직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30.>

제 8 조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혹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본 협회는 선수등록규정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선수(대리인 포함) 또는 전·현 소속단체장의 요청 시 등록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조정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선수 등록

제9조 (선수등록)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학생운동부 및 스포츠클럽 혹은 팀에 일반(팀 또는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개정 2015.4.30.>

제10조 (등록구분) ① 본 협회 단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선수등록을 한다.

1. 클럽팀
2. 스포츠클럽팀(체육시설, 체육관 포함)
3. 학교운동팀(장애인재활시설 포함)
4. 일반팀(개인)

② 팀 간 혹은 시도간의 이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문과 함께 선수등록 한다.

제11조 (등록시기) ① 등록기간은 5월 15일 이전으로 하며, 신인선수와 신설팀은 등록마감 이후에도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선수등록은 등록마감일까지 본 협회가 운용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신청되거나 마감 당일 소인의 본 협회 접수 우편물까지 유효하다.<개정 2015.4.30.>

제12조 (등록자격) ① 선수등록은 본 협회의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5.4.30.>

②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외국국적자로서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거나, 우수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도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장의 추천으로 해당 경기단체 위원회가 승인한 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비)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해당 경기단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선수등록비와 팀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 협회 선수등록비 관련은 표-1을 참고로 한다.
<11.3.26. 개정>

제14조 (등록자격의 제한) ①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내선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선수등록이 가능하다. 경기단체별로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11.3.26. 개정)

② 동일인이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또는 스포츠클럽 등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동일인이 2 이상의 경기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제15조 (등록절차) ① 선수등록은 소속단체(팀) 단위로 일괄 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는 시·도 가맹단체에 제출한다.<개정 2015.4.30.>

③ 시·도 가맹단체는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여 선수등록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승인을 요청한다.<개정 2015.4.30.>

④ 본 협회는 서류점검 후 선수등록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작성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본 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절차를 시행한 전산출력물로 등록서류를 대체하여야 하며,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등록단체) 선수등록은 당해 선수 및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장애인력비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장애인력비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17조 (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단체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단체(또는 팀)의 해체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경우 계약만료
2.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한한다)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경우

③ 이 규정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된 선수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임의의 이적 및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만 예외로 이적이 허용된다.

1. 실업팀 소속이 아닌 선수가 소속시도에서 인정한 실업팀으로의 이동을 할 경우
2. 현 소속팀의 해체<신설 2015.4.30.>

제18조 (선수구제) ①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회의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4.30.>

② 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 발급을 부당하게 기피하는 경우, 본 협회의 경기단체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5.4.30.>

③ 선수가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경기단체에 대하여 즉시 부당등록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경기단체 본 협회로부터 받은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 4 장 선수활동

제19조 (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선수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등록을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선수활동의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20조 (선수활동의 제한) 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이하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본 협회나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본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최근 선수등록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한다.

⑤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본 협회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본 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⑦ 등록된 선수가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단체의 규정에 따라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경기단체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입원 또는 입원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2.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한한다)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본 협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3. 계약의 만료 또는 사직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기피로 인하여 당해 본 협회 위원회로부터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4. 외국에서 귀국한 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거나, 우수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도가맹단체의 추천으로 본 협회 위원회가 승인한 자

제 5 장 징계조치

제22조 (제한조치) ①본 협회에서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보호자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

2.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를 포함한다) :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해당 경기단체의 활동자격 정지

②징계만료 및 징계해제 후 재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③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의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인사위원회 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23조 (위반자 조치절차) ①본 협회는 제 규정 위반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 제규정위반자는 본 협회의 상벌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②특수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본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경감, 변경 또는 해제시킬 수 없다.

④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해제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4.30.>

<표-1>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선수 등록비 현황

구분	선수		팀	
	Quad	Open	Quad	Open
신규	20,000	20,000	200,000	200,000
재등록	10,000	10,000	100,000	100,000

1. 1회 이상 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다면 재등록으로 인정
2. 팀이 시도를 변경할 경우 신규로 등록

<부록> 이적동의서

접수번호	
<h1>이 적 동 의 서</h1>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팀명>	
<이적팀명>	
<p>본 협회(팀)에서는 대한장애인럭비협회 선수등록 규정에 의거 _____ (소속)에서 _____ (소속)으로 상기인의 이적을 동의합니다. 20 0 0 장애인럭비협회장 (직인)</p>	
확인단체 (이적확인 단체)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연락처	

대한장애인럭비협회 귀하

